일반공급 서류제출 안내문

THE EST
춘천 | 동문 디 이스트
어 반 포 레

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 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 대상자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
- 제출 방법

서류제출기간	2025.08.18.(월) ~ 2025.08.20.(수) 3일간
제출 장소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 견본주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308-6)

■ 구비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

※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하여야함.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등상기 모든증명서류는"주민등록번호","세대주성명및관계"및"주소변동이력"등모든항목이표기되도록요청하여발급받아제출하시기바람.
※ 신청자의착오로인하여잘못접수된청약신청분의당첨으로인한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신청자본인의책임임.
※ 아래서류외자격확인을위하여사업주체에서추가서류제출을요구할수있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4조에의거당첨자서류는최대5년간보관하여야하므로제출한서류는반환되지않습니다.(보관기간:입주자로선정된자5년,입주자로선정되지않은자6개월/이후파기)

구분	필수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공통서류 (가점제 추첨제)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 제출)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사용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한 경우
		○	당첨사실 확인서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매각허가결정경매, 매각결정통지서 공매 등)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가능한 여타의 자료 *(예시) 경매: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배분계산서 등
부적격 소명자료		○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주택공시가격 등)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서류